

2020년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	
회의 일시	2020년 9월 25일(금) 10:00
회의 장소	임원회의실
참석 위원	근로자위원: 김성일, 이수원, 조병근 사용자위원: 정진우, 남규선, 홍계신
협의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복무규정 개정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을 최대 35시간까지 확대, 단축근로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(자녀 1명당 최초 1년 중)까지 가산 - 여성과 임신부 초과근로 제한 내용을 명시 2. 인사규정 개정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근로기준법」과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육아휴직 허용 제한 대상자 재직기간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적용하고, 육아휴직자 근로조건 보호,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조항 명문화 3. 「임금피크제 운영 지침」과 「임금피크제 지원 방안」의 단순 통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금피크제 지원 방안 내용인 교육훈련과 퇴직준비연수 부분을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으로 일원화 4. 기술자격수당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측의 수당 신설 배경과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듣고, 사측에서 현재 총인건비 한도와 인건비 예산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함 - 향후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시기에 기술자격수당을 포함한 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에서 적용 중인 수당들에 대해 확인 후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
의결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취업규칙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: 특별휴가, 임신부 보호,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- 제53조(해고예고 예외사항)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개정 2. “노사 공동 사회적 책임 실천 공동 선언문” 채택
보고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020년 제3차 직원 채용 결과에 대해 사측에서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관리실 5급 1명, 09.01일 임용 2. 선택적복지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'21년부터 적용 예정임을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려동물 진료비/여행 시 주유비/영상·음원·도서 온라인 이용 포함 3. 정부 요청 사항으로 「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규정」 제정 예정 보고 4. 교육훈련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계획 보고 5. 2020년 제4차 직원 채용 계획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공식 총원 예정: 5급 1명, 12월 임용 예정
기타 참고 사항,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	